



##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
[시행 2021. 7. 1.] [법률 제17807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**【제정·개정이유】** **제정·개정문** **전체 제정·개정이유**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고 있는바,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**【제정·개정문】** **제정·개정이유** **전체 제정·개정문**

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       문재인 (인)

2020년 12월 29일

국무총리        정세균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       진영

● 법률 제17807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현지실사 등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

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,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"를 "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"로 한다.

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

제44조제1호 중 "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"을 "기관의 임원 및 직원"으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